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93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11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18.

경제도시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김장관 의원 등 8명(서민우, 강한곤, 김기열, 박종길, 이선주, 남현주, 정순옥)
- 발의일자: 2022. 11. 4.(금)
- 회부일자: 2022. 11. 4.(금)
- 검토기간: 2022. 11. 4.(금) ~ 11. 9.(수)

## 2.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·검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- 포상 및 준용에 대한 사항(안 제8조, 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제정조례안: 붙임

- 관계법령
 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6조
 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,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도·감독,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을 규정하고 있음.
-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관계법령 등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용소방대”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범위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지원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보고·검사 등)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법 제31조 등에 따른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6조에 따른 보고·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화재 예방,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 관계 법령 】

### 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7조(임무)**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16조(활동비 지원)**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*제13조(임무)**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